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교 통 · 에 너 지 · 환 경 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 증명 등을 위한 제출 서류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,

조건부 면세물품 중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시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·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 집행을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17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나목 중 “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”을 “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”를 “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)”으로, “이를”을 “사업자등록증 사본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“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”를 “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2호 중 “유류공급명세서”를 “면세용도 급유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”를 “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출하여”를 “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”를 “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제도 개별소비세를 신고·납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·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.	4. ----- -----.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제조자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5조(미납세반출승인신청)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(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)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	제15조(미납세반출승인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
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
어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④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,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제4호,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

----- 제출(국세 정보통신망을
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 --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

----- 사업자등록증명
(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)-----

 --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-----
 --.

⑤-----

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
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
포함한다)하여 그 승인을 얻어
야 한다.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
또는 세관장은 「전자정부법」
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
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
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
다.

⑥ (생략)

제17조(반입신고·반입증명 및 용
도증명) ① (생 략)

②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

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
는 제외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
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
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-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반입신고·반입증명 및 용
도증명) ① (현행과 같음)

(2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